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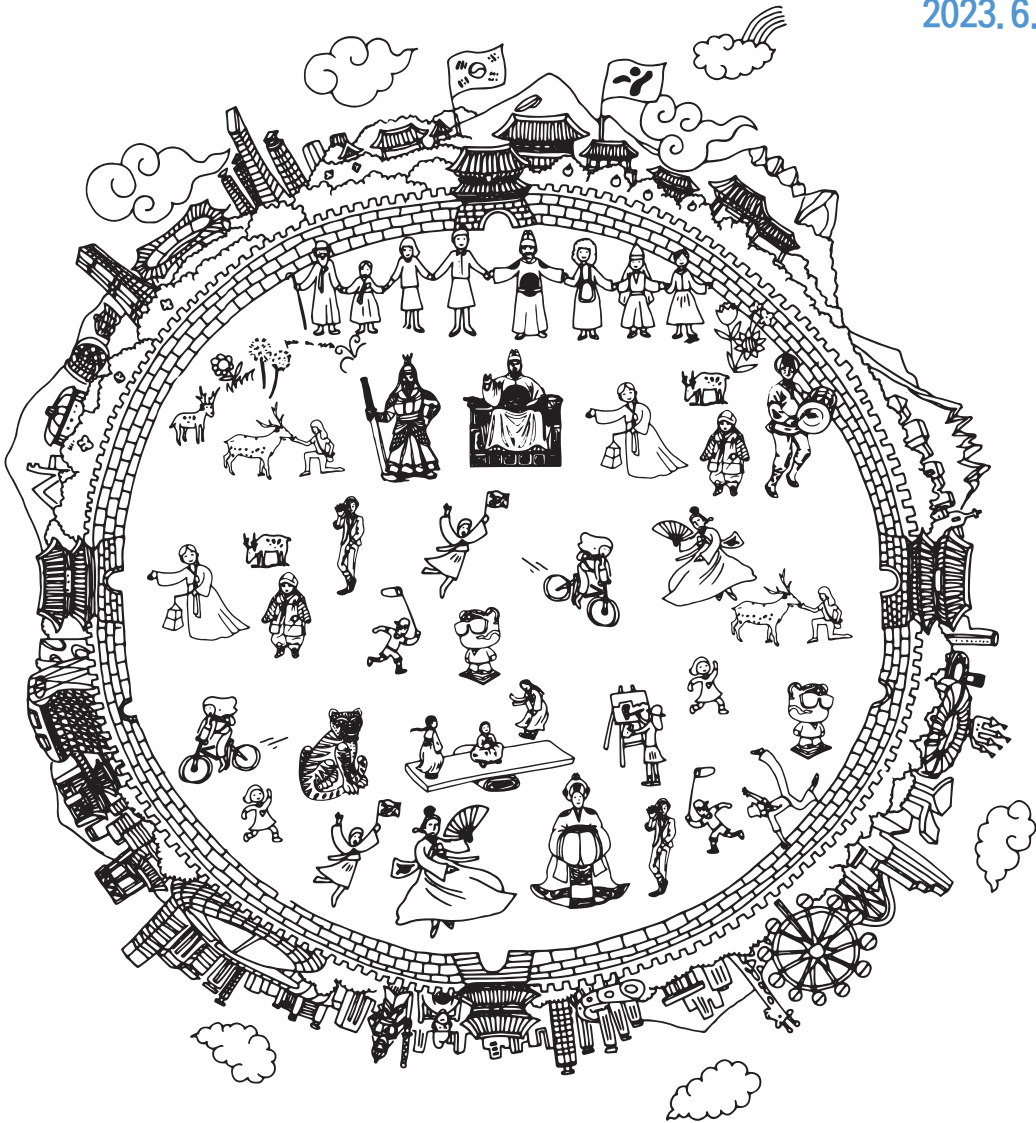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81호
2023. 6. 16.(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 - 176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3 - 176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제2023 - 176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 고 시

제2023 - 249호	건축허가 제한(연장) 지형도면 고시	32
--------------	---------------------------	----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76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 가. 한강공원에 친환경 순환관람차를 도입하여 생태환경 및 시설물과 연계하는 등 관광 활성화 도모
- 나. 한강 개최 축제 및 시설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근거, 방식 및 범위 규정
- 나.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이용대상 및 이용료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 3780 - 0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 - 2133 - 0740
- (2) E - mail: gs1037621@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기획예산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 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명칭) 제2조제2호에 따른 순환관람차의 명칭은 “한강해치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순환관람차 운행지역의 특성 및 이용자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순환관람차의 운영)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관람차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한강공원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관람차를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행사 등 관계자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이동약자(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동약자의 이용편의) 시장은 이동약자의 원활한 순환관람차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제6조제1항 관련)

기준 및 이용료 범위		비 고
* 1회 탑승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500~2,000원 1,000~3,000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76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및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고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본 엔데믹 선언(' 23.5.19.)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축소되어 시민 건강국 내 ‘코로나19대응지원과’ 폐지 후 ‘의료자원과’로 재편

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

- 재산 취득·활용 업무 관련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및 ‘재무국 재산관리과’의 소관 사무 조정
- 디지털행정서비스 업무(서울시민카드, 자치행정과) 이관에 따라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사무 조정
- 도시철도 업무 관련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소관 사무 조정
- 녹색기술산업 업무 관련 기후환경본부 내 ‘기후환경정책과’ 및 ‘녹색에너지과’ 소관 사무 조정
-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 종료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운영

제10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2.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5.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총괄

제14조제4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23.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1항 중 “코로나19대응지원과”를 “의료자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을 “의료자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을 “의료자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2.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5.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7항제16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3.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재산 등의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변경(단, 정거장 신설, 10%이상 노선 변경, 타 노선 연계, 차량기지 위치 변경, 부대 및 부속사업 등 중요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디지털정책관) ① ~ ④ (생략)	제9조(디지털정책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디지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블록체인 계획 수립, 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u>	4. <u>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u>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⑪ (생략)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공공자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u>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1. <u>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u>
2. <u>공공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u>	2. <u>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u>	<삭 제>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5. <u>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u>
⑬, ⑭ (생략)	6. <u>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 ④ (생략)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u>10. ~ 16. (생략)</u> ⑥ ~ ⑭ (생략)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과) ① ~ ③ (생략) 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u><신설></u> 23. ~ 25. (생략) ⑤ ~ ⑦ (생략) ⑧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16. ~ 18. (생략)</u> ⑨ ~ ⑪ (생략)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건강과, 정신건강과, 감염병관리과, <u>코로나19대응지원과</u>, 식품정책과, 감염병연구센터, 공공	⑤ ----- -----. 1. ~ 9. (현행과 같음) <u>10.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총괄</u> <u>11.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u>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 -----. 1. ~ 22. (현행과 같음) <u>23.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24. ~ 26. (현행 제23호~제25호와 같음)</u>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4. (현행과 같음) <u><삭제></u> <u>15. ~ 17. (현행제8항제16호~제18호와 같음)</u>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 ----- ----- ----- <u>의료자원과</u> -----

현행	개정안
의료추진단을 둔다.	----- -----.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 <u>코로나19대응지원과장</u> ·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 ----- ----- <u>의료자원과장</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의료행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u>약무행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 15. (생략)	7.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u>코로나19대응지원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의료자원과장</u> ----- -----.
1. <u>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에 관한 사항</u>	1. <u>의료행정에 관한 사항</u>
2. <u>코로나19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u>	2. <u>약무행정에 관한 사항</u>
3. <u>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u>	3. <u>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신설></u> 5. <u>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u> ⑨ ~ ⑪ (생략)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 ⑥ (생략)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16.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u> ⑧ ~ ⑩ (생략) 제17조의4(재무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략) ④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u>3.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u> <u>4.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u> 5. ~ 12. (생략) ⑤ ~ ⑧ (생략) 제70조(도시철도국) ① (생략) ② 도시철도설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4.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u> 5. <u>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1. ~ 15. (현행과 같음) <u><삭제></u>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재무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재산 등의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제></u> 4.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0조(도시철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8.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변경(단, 정거장 신설, 10%이상 노선 변경, 타 노선 연계, 차량기지 위치 변경, 부대 및 부속사업 등 중요사항은 제외한다.)</u>
8. 9. (생략)	9.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76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대응 및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 등을 위해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직급체계 개편, 관리운영직 조정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총237명)

※ 직급별 정원 증감 내역

(일반직) 5급 +74명, 6급 +100명, 7급 △101명, 8급 △48명, 9급 △25명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 - 2133 - 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692	429	1,157	5,226	226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17	4,637	420	393	5,043	224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544	1,049	54	59	335	47
행정	724	533	50	25	74	42
사회복지	3	2			1	

공업	68	39			28	1
녹지	28	17			11	

간호	21	15			6	
의료기술	7	5		1	1	
시설	207	135			71	1
방송통신	21	18		1	2	
행정또는시설	71	57			11	3
행정 · 공업또는시설	77	68		1	8	
방재안전또는시설	7	7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약무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간호조무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679	1,919	178	111	1,367	104
행정	1,418	888	148	43	265	74
세무	54	51	2			1
사회복지	26	23			3	
전산	102	75	4	3	17	3

공업	351	111	6	4	228	2
녹지	72	37			35	
약무	15	3			12	
간호	147	13			134	
의료기술	44	2		3	39	
보건	23	23				
환경	50	29		15	6	
시설	583	325	3	2	235	18
방송통신	58	34	2	4	18	
위생	11			1	10	
간호조무	6				6	
운전	39	22	1	1	15	
행정또는공업	11	6			5	
행정또는녹지	10	3			7	
행정또는시설	46	44			2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1			6	1
통신운영	15	5	1	1	8	
사무운영	26	6	1	2	16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세무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약무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간호조무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전산또는방송통신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환경란, 방재안전또는녹지란을 각각 삭제한다.

7급 소계	3,337	1,301	123	141	1,711	61
행정	1,236	662	90	59	378	47
사회복지	36	21	1		13	1
세무	30	30				
전산	138	80	4	10	43	1
공업	408	24	6	10	366	2
녹지	90	11		2	77	

약무	13	3			10	
간호	141	8		3	130	
의료기술	42	2		1	39	
보건	17	15			2	
환경	35	7		16	12	
시설	545	234	2	5	296	8
방송통신	55	22	3	13	17	
간호조무	3				3	
시설관리	8	4			4	
행정또는복지	7	1			6	
행정또는시설	35	32			2	1
행정·공업또는시설	37	35			2	
전산또는방송통신	4	1	1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4	11			3	

전기운영	40	3			37	
기계운영	59	3	1		55	

사무운영	74	6	2	1	65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보건란, 조리란, 간호조무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또는녹지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116	136	38	66	873	3
행정	109	19	7	12	69	2
사회복지	9				9	

방호	86	28	6	3	49	
공업	97	4	1	5	87	
녹지	22			1	21	
간호	118				118	
의료기술	45				45	

환경	19	1			18	
시설	77	6			71	
방송통신	16	2		7	7	
보건	6				6	
조리	4	4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17	1		1	115	
운전	100	14	3	12	71	
행정또는공업	1	1				
통신운영	2	1			1	
전기운영	25	1	1		23	
기계운영	36	1		1	34	
농림운영	7			1	6	
사무운영	137	42	13	17	64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보건란, 시설관리란,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72	3	3	3	563	
행정	31	1	1		29	
전산	2				2	
공업	58	1			57	
의료기술	27				27	
시설	10				10	
방송통신	2			2		
보건	5				5	
시설관리	346	1		1	344	
운전	7				7	

같은 표 6급 상당 소계란, 6급상당 소계란 아래 비서관, 8급상당 소계란, 8급상당 소계란 아래 비서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상당 소계	5	4	1			
비서관	5	4	1			
8급상당 소계	1		1			
비서관	1		1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4,684	429	1,159	5,232	226	총계	11,730	4,692	429	1,157	5,226	226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17	4,629	420	395	5,049	224	일반직계	10,717	4,637	420	393	5,043	224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470	979	51	58	335	47	5급 소계	1,544	1,049	54	59	335	47
행정	676	489	47	24	74	42	행정	724	533	50	25	74	42
사회복지	2	1			1		사회복지	3	2			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63	34			28	1	공업	68	39			28	1
농지	25	14			11		농지	28	17			11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9	13			6		간호	21	15			6	
의료기술	6	4		1	1		의료기술	7	5		1	1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	192	120			71	1	시설	207	135			71	1
(생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20	17		1	2		방송통신	21	18		1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73	59			11	3	행정또는시설	71	57			11	3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78	69		1	8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8		1	8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시설	6	6					방재안전또는시설	7	7				
(생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579	1,887	174	106	1,308	104	6급 소계	3,679	1,919	178	111	1,367	104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	<u>1,389</u>	<u>877</u>	<u>144</u>	<u>40</u>	<u>254</u>	74	행정	<u>1,418</u>	<u>888</u>	<u>148</u>	<u>43</u>	<u>265</u>	74
세무	<u>52</u>	<u>49</u>	2			1	세무	<u>54</u>	<u>51</u>	2			1
사회복지	<u>24</u>	<u>21</u>			3		사회복지	<u>26</u>	<u>23</u>			3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u>99</u>	<u>73</u>	4	3	<u>16</u>	3	전산	<u>102</u>	<u>75</u>	4	3	<u>17</u>	3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u>342</u>	<u>108</u>	6	4	<u>222</u>	2	공업	<u>351</u>	<u>111</u>	6	4	<u>228</u>	2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	<u>71</u>	<u>36</u>			35		녹지	<u>72</u>	<u>37</u>			35	
(생략)							(현행과 같음)						
약무	<u>13</u>	3			<u>10</u>		약무	<u>15</u>	3			<u>12</u>	
간호	<u>125</u>	<u>11</u>			<u>114</u>		간호	<u>147</u>	<u>13</u>			<u>134</u>	
의료기술	<u>35</u>	<u>1</u>		3	<u>31</u>		의료기술	<u>44</u>	<u>2</u>		3	<u>39</u>	
보건	<u>18</u>	<u>18</u>					보건	<u>23</u>	<u>23</u>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u>46</u>	<u>27</u>		<u>13</u>	6		환경	<u>50</u>	<u>29</u>		<u>15</u>	6	
시설	<u>581</u>	<u>326</u>	3	2	<u>232</u>	18	시설	<u>583</u>	<u>325</u>	3	2	<u>235</u>	18
(생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u>53</u>	<u>30</u>	2	4	<u>17</u>		방송통신	<u>58</u>	<u>34</u>	2	4	<u>18</u>	
위생	<u>12</u>			1	<u>11</u>		위생	<u>11</u>			1	<u>10</u>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조무	<u>5</u>				<u>5</u>		간호조무	<u>6</u>				<u>6</u>	
(생략)							(현행과 같음)						
운전	<u>37</u>	22	1	1	<u>13</u>		운전	<u>39</u>	22	1	1	<u>15</u>	
행정또는공업	11	<u>7</u>			<u>4</u>		행정또는공업	11	<u>6</u>			<u>5</u>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u>8</u>	3			<u>5</u>		행정또는녹지	<u>10</u>	3			<u>7</u>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u>45</u>	<u>43</u>			2		행정또는시설	<u>46</u>	<u>44</u>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u>80</u>	<u>73</u>			6	1	행정·공업또는시설	<u>78</u>	<u>71</u>			6	1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현행과 같음)						
통신운영	15	5	1	2	7		통신운영	15	5	1	1	8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24	6	1	1	15	1	사무운영	26	6	1	2	16	1
7급 소계	3,438	1,369	124	145	1,739	61	7급 소계	3,337	1,301	123	141	1,711	61
행정	1,277	693	91	59	387	47	행정	1,236	662	90	59	378	47
사회복지	38	23	1		13	1	사회복지	36	21	1		13	1
세무	32	32					세무	30	30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141	82	5	10	43	1	전산	138	80	4	10	43	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412	25	6	12	367	2	공업	408	24	6	10	366	2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	90	13		2	75		녹지	90	11		2	77	
(생략)							(현행과 같음)						
약무	15	3			12		약무	13	3			10	
간호	145	12		3	130		간호	141	8		3	130	
의료기술	49	2		2	45		의료기술	42	2		1	39	
보건	19	17			2		보건	17	15			2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38	8		18	12		환경	35	7		16	12	
시설	554	244	2	5	295	8	시설	545	234	2	5	296	8
(생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56	24	3	12	17		방송통신	55	22	3	13	17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조무	6				6		간호조무	3				3	
시설관리	11	4			7		시설관리	8	4			4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녹지	7	1			6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36	33			2	1	행정또는시설	35	32			2	1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u>40</u>	<u>38</u>			2		행정·공업또는시설	<u>37</u>	<u>35</u>			2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또는방송통신	<u>3</u>	1		1	1		전산또는방송통신	<u>4</u>	1	<u>1</u>	1	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환경	<u>1</u>	<u>1</u>					(간 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시설	<u>15</u>	<u>12</u>			3		방재안전또는시설	<u>14</u>	<u>11</u>			3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녹지	<u>1</u>	<u>1</u>					(간 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u>41</u>	3			<u>38</u>		전기운영	<u>40</u>	3			<u>37</u>	
기계운영	<u>64</u>	<u>4</u>	1		<u>59</u>		기계운영	<u>59</u>	<u>3</u>	1		<u>55</u>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u>76</u>	6	2	1	<u>67</u>		사무운영	<u>74</u>	6	2	1	<u>65</u>	
8급 소계	<u>1,164</u>	<u>157</u>	<u>44</u>	<u>70</u>	<u>890</u>	3	8급 소계	<u>1,116</u>	<u>136</u>	<u>38</u>	<u>66</u>	<u>873</u>	3
행정	<u>132</u>	<u>28</u>	<u>13</u>	<u>16</u>	<u>73</u>	2	행정	<u>109</u>	<u>19</u>	<u>7</u>	<u>12</u>	<u>69</u>	2
사회복지	<u>10</u>	<u>1</u>			9		사회복지	<u>9</u>				9	
(생략)							(현행과 같음)						
방호	<u>85</u>	<u>27</u>	6	3	49		방호	<u>86</u>	<u>28</u>	6	3	49	
공업	<u>102</u>	<u>7</u>	1	5	<u>89</u>		공업	<u>97</u>	<u>4</u>	1	5	<u>87</u>	
녹지	<u>21</u>			1	<u>20</u>		녹지	<u>22</u>			1	<u>21</u>	
간호	<u>138</u>				<u>138</u>		간호	<u>118</u>				<u>118</u>	
의료기술	<u>47</u>	<u>1</u>			<u>46</u>		의료기술	<u>45</u>				<u>45</u>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u>20</u>	<u>2</u>			18		환경	<u>19</u>	<u>1</u>			18	
시설	<u>81</u>	<u>8</u>			<u>73</u>		시설	<u>77</u>	<u>6</u>			<u>71</u>	
방송통신	<u>18</u>	<u>4</u>		7	7		방송통신	<u>16</u>	<u>2</u>		7	7	
(생략)							(현행과 같음)						
보건	<u>7</u>	<u>1</u>			6		보건	<u>6</u>				6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조리	<u>3</u>	<u>3</u>					조리	<u>4</u>	<u>4</u>				
간호조무	<u>4</u>				<u>4</u>		간호조무	<u>6</u>				<u>6</u>	
시설관리	<u>68</u>	1			<u>67</u>		시설관리	<u>117</u>	1		<u>1</u>	<u>115</u>	
운전	<u>102</u>	<u>16</u>	3	12	71		운전	<u>100</u>	<u>14</u>	3	12	71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u>2</u>	1			<u>1</u>		행정또는공업	<u>1</u>	1				
행정또는복지	<u>2</u>				<u>2</u>		(간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통신운영	<u>3</u>	1			<u>2</u>		통신운영	<u>2</u>	1			<u>1</u>	
전기운영	<u>29</u>	1	1		<u>27</u>		전기운영	<u>25</u>	1	1		<u>23</u>	
기계운영	<u>62</u>	<u>2</u>		1	<u>59</u>		기계운영	<u>36</u>	<u>1</u>		1	<u>34</u>	
(생략)							(현행과 같음)						
농림운영	<u>8</u>			1	<u>7</u>		농림운영	<u>7</u>			1	<u>6</u>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u>143</u>	42	13	<u>18</u>	<u>69</u>	1	사무운영	<u>137</u>	42	13	<u>17</u>	<u>64</u>	1
9급 소계	<u>597</u>	<u>8</u>	3	3	<u>583</u>	-	9급 소계	<u>572</u>	<u>3</u>	3	3	<u>563</u>	
행정	<u>30</u>	1	1		<u>28</u>		행정	<u>31</u>	1	1		<u>29</u>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u>3</u>				<u>3</u>		전산	<u>2</u>				<u>2</u>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u>73</u>	<u>3</u>			<u>70</u>		공업	<u>58</u>	<u>1</u>			<u>57</u>	
(생략)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u>28</u>				<u>28</u>		의료기술	<u>27</u>				<u>27</u>	
시설	<u>11</u>				<u>11</u>		시설	<u>10</u>				<u>10</u>	
방송통신	<u>4</u>	<u>1</u>		2	<u>1</u>		방송통신	<u>2</u>			2		
보건	<u>7</u>	<u>2</u>			5		보건	<u>5</u>				5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u>348</u>	1		1	<u>346</u>		시설관리	<u>346</u>	1		1	<u>344</u>	
운전	<u>9</u>				<u>9</u>		운전	<u>7</u>				<u>7</u>	
(생략)							(현행과 같음)						
별정직 소계	37	28	9				별정직 소계	37	28	9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현행과 같음)						
6급상당 소계	4	4					6급상당 소계	5	4	1			
비서	4	4					비서	5	4	1			
(생략)							(현행과 같음)						
8급상당 소계	2		2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2		2				비서	1		1			
(생략)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49호

건축허가 제한(연장) 지형도면 고시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연장)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1) 기존 : 2021. 6. 17. ~ 2023. 6. 16.

2) 연장 : 2023. 6. 17. ~ 2024. 6. 16.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종로구	송인동 1169	송인동 1169번지 일대	14,157	
2	성동구	금호23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30,706	
3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37,662	
4	성북구	장위8	장위동 85번지 일대	116,402	
5	성북구	장위9	장위동 238 - 83번지 일대	85,878	
6	노원구	상계3	상계동 71 - 183번지 일대	104,000	
7	서대문구	홍은1	홍은동 48 - 163번지 일대	11,466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8	서대문구	충정로1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075	
9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연희동 721-6번지 일대	49,745	
10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 941번지 일대	90,346	
11	영등포구	신길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59,379	
12	동작구	본동	본동 47번지 일대	51,696	
13	강동구	천호A1-1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9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2. 지형도면 : 도면 생략

- 이전 고시된 도면과 같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8호(2021.6.17.) 참고)
- 고시문 위치 :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